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: 2020. 5. 8.

1차 개정 : 2022. 5.20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배달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함)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주관부서) 이사회 주관부서는 법인사무국으로 하며,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보, 회의장소 준비,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추진한다.
- 제3조(이사회 의장)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한 다.
 -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학교법인 배달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함) 제24조에 따른다.
- 제4조(이사의 직무) ① 이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 이사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쟁점과 다른 발언을 지속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.
- 제5조(의결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정관에 의하여 총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.
 - 1. 학교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- 5. 한라대학교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 - 6. 한라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-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제6조(회의일정) ① 정기이사회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.
 - ② 임시이사회는 정관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제7조(이사회 안건 제출) ① 이사회 의안은 3인 이상의 이사가 제의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.
 - ② 이사장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제의하는 이사의 성명과 그 취지, 안 건 내용을 이사회 소집통보 2주일 전까지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총장은 이사장에게 이사회에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그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예산안 등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한 이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 -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- 제8조(안건의 사전검토 등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법인의 감사 또는 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, 그 내용 중 관련 법령, 정관 또는 규정 등의 위반 여부, 예산 관련 사항 기타 절차상의 적정성 등을 검증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 재적이사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9조(소집통지)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개최일정, 장소 및 부의 안 건을 확정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한라대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5.20.)
- 제10조(안건설명 및 배석)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한다.
 - ②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대학의 교직원,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1조(심의·의결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이사회 안건의 심의 · 의결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.
 - 1.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사들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먼저 1인의 이사가 찬성 또는 동의·반대·수정·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.
 - 2. 다른 이사는 재청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3. 각 이사들은 먼저 다른 이사들이 발의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·반대·수정·보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4. 이사들의 의견이 조정된 후 이사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의결할 수 있다.
 - ③ 이사회 의결 방식은 구두투표로 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출석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의결한다.
 - ④ 그밖에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제12조(의결제척사유)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총장 및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
 - 2.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 - 3. 특정 임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제13조(회의록 등의 작성) ① 이사회 회의내용은 이사회 회의록(이하 "회의록"이라 함)에 기재하고, 이사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다.
 - ② 회의록(회의조서 포함)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는 회의 내용을 녹음 · 녹취할 수 있다.
 - ④ 회의록 원본은 영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⑤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정관 제32조에 의거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간사 및 서기) ①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법인사무국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는 이사회 소집통지, 회의장소 준비,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.

- 제15조(소위원회 운영 내규) 이사회 소위원회 또는 별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별도의 내규를 만들 수 있다.
- 제16조(경비지원 등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 또는 위원,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인과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22.5.20.)
 -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경비 외에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<2020. 5. 8., 제정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